

후쿠오카시 방문 외국인의 질병 및 부상 시 대응 안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권태감 등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증상입니까?

네

아니요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① 상담창구로 연락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 후 신속히)

후쿠오카시 외국인 전용 전화 전화번호:092-687-5357 (24시간,20언어 대응가능)

※진찰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소개 및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혹은 오른쪽 QR코드)에 도도부현의 외국인 상담 창구 연락처/ 상담 가능 시간/ 상담가능 언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http://www.c19.mhlw.go.jp/area-jp.html>

도도부현의 외국인 상담 창구 연락처
상담 가능 시간/ 상담가능 언어



② 검사 후쿠오카시 외국인 전용 전화로 진찰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소개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의료기관에 연락한뒤에 진찰을 받아주십시오.

※ 의사라 진료를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한 검사비용은 무료입니다.
(공비 부담)

(음성일 경우)

(양성일 경우)

③ 검사 후

➢ 기본적으로 숙박중인 호텔등에서 아래기간 요양해주시요. 그리고 호텔 직원분께 검사결과 (양성)를 알려주십시오.
호텔쪽이 숙박이 불가능이라는 설명을 드리는 경우에는 후쿠오카현이 계약중인 숙박요양시설(호텔)에 입소하게 됩니다. 먼저 위에 있는 외국인 전용 전화에 상의해주시요.

➢ 아울러, 여행 동행자가 밀접 접촉자(※정의는 2참조) 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밀접 접촉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인이 확보중인 숙박시설에서 대기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외출은 자제해 주십시오.

④ 【확진자】 입원 (10일간) / 격리 (7일간) ※1



확진자의 입원 의료비에 대해서는, 확진자에게, 가입중인 민간 의료보험 보상액 범위내에서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 【밀접 접촉자】 격리 (5일간) ※2



건강 상태는 자가 체크를 하여, 증상이 나타나면 ①A의 상담창구 (또는 지정된 연락처)로 연락하십시오.

④ 【검사 결과 음성】 【밀접 접촉자가 아닌 경우】 여행을 계속하십시오



유증상자는 검사가 음성이라고 해도, 건강 상태 관찰과 철저한 방역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 ㉠ 이외의 병 · 부상 질병 / 부상

① 의료 기관 진찰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의 의료
후쿠오카시 의료 통역 콜센터
전화 번호; 092-733-5429 (24시간, 20언어 대응가능)



아래 사이트에서, 외국인 수용 가능한 전국의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jnto.go.jp/emergency/kor/mi_guide.html

의료 이외의 문의 창구

일본 정부 관광국 「Japan Visitor Hotline」
[전화번호] 050-3816-2787
<365일/24시간 대응 (일/영/중/한)>

※1: 확진자 격리 기간

- 입원 중인 경우는, 증상 발생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11일째부터, 또는 증상 호전 후 72시간 경과 후부터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 증상이 있는 분이 입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상이 발생한 날부터 7일간 이상 경과, 또는 증상 호전후 24시간 경과 후부터, 검사 없이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증상이 없는데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양성이 확정된 검체 채취일 기점으로 7일 경과 후 8일째 (5일째에 검사 키트로 음성을 확인한 경우는 (6일째)부터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2: 밀접 접촉자의 정의와 격리 기간

- 밀접 접촉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근거리에서 접촉 또는 장시간 접촉하여, 감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을 가리킵니다.
- 밀접접촉자인지 아닌지는 "1m정도, 15분정도"등 확진자와의 접촉거리, 접촉시간, 마스크 착용 유무등을 감안하여, 판단합니다.
- 후쿠오카시에서는 밀접 접촉자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 밀접 접촉자에 해당하는분이 있는 경우에는 확진자 본인이 해당하는 분께 알려 주십시오.
-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간은, 감염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5일간 (6일째 해제) 이지만, 2일째 및 3일째에 승인된 항원 검사 키트를 이용한 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경우는, 3일째부터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미지불 이력이 있는 외국인은, 향후 일본 입국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십시오.